

공인기관 인정신청서

[] 신규 [] 인정 분야 확대 [] 인정 분야 변경
[] 그 밖의 변경 [] 재평가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90일

구분	* 교정, 시험,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 분야를 적습니다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기관	기관명	대표자
	법인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	전화번호
	팩스번호	전자우편
	사업장 소재지 (우) *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.	

신청목적	*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습니다.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분야	별첨
------	----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·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·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고유번호증(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 3.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(사업장별로 신청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인정 신청 분야를 적습니다) 4.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,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·검토자료 5.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.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*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. * 모든 자료와 문서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다만,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(수입인지)는 별도 제출합니다]	수수료 뒤쪽 참조
------	--	--------------

수수료

1. 공인기관으로 인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
- 가. 신청 수수료: 50,000원
- 나. 서류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3일. 다만, 기술문서 심사 시에는 5일로 합니다.
- 다. 현장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평가 일수 × 평가자 수 + 출장여비
2.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
- 가. 신청 수수료
- 1) 확대: 50,000원
- 2) 변경: 20,000원
- 나. 서류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1일. 다만,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합니다.
- 다. 현장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평가 일수 × 평가자 수 + 출장여비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